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재처분 상한 설정, 중복규정 삭제 등〉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4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중 수

목 차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2205747)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일괄개정안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
1. 제재처분의 상한 설정(유형1)	2
2. 중복규정 삭제(유형2)	3
IV. 개별 법률 검토 의견	6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가. 개정안의 내용	6
나. 검토의견	7
다. 국토교통부 의견	10
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가. 개정안의 내용	11
나. 검토의견	16
1) 이착륙장 설치자에 대한 제재 처분 기간 상한 설정(안 제25조제7항) ..	16
2) 처분의 세부 기준 하위법령 위임 필요	18
3)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효력 정지 상한 기간 설정 및 처분의 예시로서 원상회복 명령 추가(일괄개정안 제58조)	19
4) 중복 규정 삭제(일괄개정안 제70조)	22
다. 국토교통부 의견	23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가. 개정안의 내용	24
나. 검토의견	25

다. 국토교통부 의견	27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가. 개정안의 내용	28
나. 검토의견	29
1)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품질인증 표시 서비스 중지 기한 상한 설정(개정안 제83조제7항)	29
2) 처분의 세부 기준 하위법령 위임(개정안 제83조제9항)	32
다. 국토교통부 의견	33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가. 개정안의 내용	34
나. 검토의견	35
다. 국토교통부 의견	37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가. 개정안의 내용	38
나. 검토의견	39
다. 국토교통부 의견	40
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가. 개정안의 내용	42
나. 검토의견	44
다. 국토교통부 의견	48
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가. 개정안의 내용	49
나. 검토의견	50
다. 국토교통부 의견	52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220574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영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0.
3.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일괄개정안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일괄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21.3.)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별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일괄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정비 유형은 다음과 같음.

1. 제재처분의 상한 설정(유형1)

제재처분¹⁾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

1)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 처분을 일컬음.

「행정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에 일괄개정안의 취지는 제재처분의 상한이 미비된 법률에 대하여 상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이때 제재처분의 상한은 현행 하위법령상 세 부기준 및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임.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중복규정 삭제(유형2)

「행정기본법」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 처분의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즉,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개별 법률

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근거, 이행강제금 금액의 가중·감경, 문서 계고 통지 및 그 내용,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의 징수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괄개정안은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절차를 중복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요건 / 3. 부과 금액 /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 5. 연간 부과 횟수나 횡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일괄개정안의 주요 내용】

연번	법 제명	제재처분의 상한 설정		중복규정 삭제 및 행정기본법 적용	
		유형1		유형2	
		조항	비고	조항	비고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현행법에 처분 상한 기준 미비	-	-
2	공항시설법	제25조 제7항	현행법에 처분 상한 기준 미비	제70조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행정기본법」과 중복
		제58조 제1항	현행법에 처분 상한 기준 미비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제29조의2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행정기본법」과 중복
4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83조 제7항	현행법에 처분 상한 기준 미비	-	-
5	도로법	-	-	제100조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행정기본법」과 중복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50조의3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행정기본법」과 중복
7	자동차관리법	제46조	현행법에 처분 상한 기준 미비	-	
8	주차장법	-	-	제32조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행정기본법」과 중복

IV. 개별 법률 검토 의견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승인의 효력정지, 공사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효력정지 또는 공사중지 처분기간의 명확한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일괄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승인 효력정지 처분 또는 공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하도록 상한을 설정(유형1)하고, 필요한 처분의 예시로서 허가·승인의 효력정지, 공사중지 외에 원상회복 명령을 추가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① ----- ----- ----- -----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 ----- . ----- -----

현행	개정안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일괄개정안은 「행정기본법」²⁾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처분의 근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별법에 반영하려는

2)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것으로, 제재처분의 상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행정의 예측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³⁾. 다만, 적정한 제재처분의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이는 행정을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은 허가·승인의 효력정지 또는 공사중지 처분 기간을 1개월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령상 기준 1개월에 2개월의 여유를 두어 3개월을 상한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행위	근거규정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2호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3)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해서도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반 행위 태양별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대통령령등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위반행위	근거규정	처분내용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1)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1)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3호	1) 공사중지 1개월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4호	허가취소
5. 법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나.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 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다.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다목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5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효력정지 1개월 허가취소

한편, 일괄개정안은 필요한 처분의 예시로 원상회복 명령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규칙 [별표1] 에서 효력정지, 공사중지, 허가취소 처분 외에 ‘원상회복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근거법률에 제

재처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4)의 취지에 따른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23조에도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25조제7항은 이착륙장 설치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승인 효력정지, 공사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효력정지, 공사중지 등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정지 또는 공사중지 처분을 하도록 그 상한을 설정(유형1)하고, 필요한 처분의 예시로서 “원상회복 명령”을 추가하는 것임.

현행법 제58조제1항은 공항·비행장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승인 효력정지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효력정지, 공사중지 등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일괄개정안은 그 효력정지 또는 공사중지 처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여 상한을 설정(유형1)하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필요한 처분의 예시에 추가하는 것임.

다음, 일괄개정안 제70조는 항공장애등 설치·관리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개별법에서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유형2).

현행	개정안
제25조(이착륙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착륙장의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설치공사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착륙장 설치허가	제25조(이착륙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착륙장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 변경으로 이착륙장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착륙장의 위치·구조 등이 설치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	⑦ ----- ----- --- <u>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6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u>----- -----. ----- -----. 1. ~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현행	개정안
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개발사업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36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제36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 ----- -----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이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이착륙장 설치자에 대한 제재 처분 기간 상한 설정(안 제25조 제7항)

일괄개정안은 이착륙장⁵⁾ 설치자⁶⁾가 위법행위를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려는 것임.

일괄개정안은 「행정기본법」⁷⁾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처분의 근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별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재처분의 상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행정의 예측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⁸⁾. 다만, 적정한 제재처분의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이는 행정을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참고로, 현재 전국에 이착륙장은 총 14개소가 존재하는데, 이 중 4개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고, 10개소는 사설 시설임.

6)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해서도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반 행위 태양별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대통령령등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일괄개정안에서는 효력 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법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이착륙장 설치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 기간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자와 지위가 유사한 공항운영자⁹⁾에 대한 공항운영 정지처분의 상한 기간이 동법 제41조¹⁰⁾에서 6개월로 규정된 점을 준용하였다는 설명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착륙장 설치자 및 공항운영

9)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10) 「공항시설법」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안전조직 및 안전장에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에 대한 효력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

한편, 일괄개정안은 이착륙장 설치자가 위반행위 시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예시로 원상회복 명령을 추가하고 있는데, 허가 받지 아니한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이착륙장 설치를 하고 있던 경우 그 이착륙장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정 변경으로 이착륙장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착륙장이 설치되고 있던 토지의 활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원상회복 명령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2) 처분의 세부 기준 하위법령 위임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착륙장 설치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 현행법에 처분의 세부 기준에 대해 규정하도록 한 하위 법령 위임 규정이 없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착륙장 설치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효력 정지 상한 기간 설정 및 처분의 예시로서 원상회복 명령 추가(일괄개정안 제58조)

일괄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법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상한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려는 것임.

일괄개정안은 「행정기본법」¹¹⁾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처분의 근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별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재처분의 상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행정의 예측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¹²⁾. 다만, 적절한 제재처분의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이는 행정을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11)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2)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해서도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반 행위 태양별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대통령령등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 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며 효력정지 또는 공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령상 기준 1개월에 2개월의 여유를 두어 3개월을 상한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0]]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및 그 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3호	공사중지 1개월 및 그 중지기간에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 변경으로 개발사업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한편, 일괄개정안은 필요한 처분의 예시로 원상회복 명령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규칙 [별표1] 에서 효력정지, 공사중지, 허가취소 처분 외에 ‘원상회복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근거법률에 제재처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13)의 취지에 따른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음.

13)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중복 규정 삭제(일괄개정안 제70조)

현행법 제70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문서 사전 고지, 사전 고지의 내용,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징수, 시정명령 이행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금지, 징수 방법,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일괄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요건 / 3. 부과 금액 /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 제70조 제3항은 그 외에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에 대해서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70조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이를 1년에 한 번씩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괄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70조제2항에서 반영하고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기본법 규정 준수 및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함. 특히, 이착륙장 설치자와 지위가 유사한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정지 처분은 법률(제41조)에서 6개월로 상한을 명확히 규정 중임.

다만, 구체적 처분기준이 미비된 공항시설법(이착륙장 설치자)은 타 입법례와 같이 상한 설정과 함께 세부기준 마련 위임도 필요함.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29조의2는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관련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괄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규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유형2).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u> ④ <u>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u> ⑤ <u>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u> <삭 제>

현행	개정안
⑥ <u>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삭 제>
⑦ <u>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삭 제>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9조의2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문서 사전 고지, 사전 고지의 내용,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징수, 시정 명령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금지, 징수 방법,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일괄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요건 / 3. 부과 금액 /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 5. 연간 부과

횡수나 횡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을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 제29조의2 제4항은 그 외에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에 대해서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29조의2제5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그 횡수를 교통행정기관이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만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괄개정안에서는 제29조의2제3항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기본법 중복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요가 있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83조제7항 및 제9항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품질인증 표시 무단 사용시 서비스를 중지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괄개정안은 서비스 중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도록 하고(안 제83조제7항), 그 세부기준은 부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9항)(유형1).

현행	개정안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u>수거·반품 및 중지</u>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u>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 ----- ---- <u>수거·반품하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u> ----- -----. ⑧ (현행과 같음) ⑨ ----- -----<u>지정 절차, 업무 범위 및 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기준</u>-----.

나. 검토의견

1)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품질인증 표시 서비스 중지 기한 상한 설정(개정안 제83조제7항)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

는 교통체계를 의미함.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¹⁴⁾을 제정·고시하고 있으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품질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 제83조제7항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품질인증 표시 무단 사용 시 서비스를 중지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한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이에 일괄개정안은 서비스 중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사행위인 표준·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미달, 오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인증효력 정지 기간의 상한이 법률 제85조¹⁵⁾에서 6개월로 명시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함.

1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표준·품질인증기관의 기준을 미달한 행위 및 오인증을 받은 경우(제85조 위반)와 표준·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해당 장비·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제83조 제7항 위반)는 표준·품질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해치는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있는바, 그 서비스 중지 기간을 인증 효력 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일괄개정안은 「행정기본법」¹⁶⁾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처분의 근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별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괄개정안과 같이 제재처분의 상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행정의 예측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¹⁷⁾. 다만, 적정한 제재처분의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이는 행정을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된 경우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다.

16)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7)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해서도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반 행위 태양별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대통령령등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에 따른 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처분의 세부 기준 하위법령 위임(개정안 제83조제9항)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인증 효력정지 처분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현행법에 인증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증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이 정비될 수 있도록 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게 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 제83조제9항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동법에서 유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한을 6개월로 설정 중이므로
행정처분의 형평성 등 고려시 개정안에 동의함.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100조는 도로관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사전통보 방법, 반복 부과 기준, 징수 기간·방법 및 제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전통보 방법, 징수 기간·방법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유형2).

현행	개정안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	④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

현행	개정안
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00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문서 사전 고지, 사전 고지의 내용,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징수, 시정명령 이행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금지, 징수 방법,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일괄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요건 / 3. 부과 금액 /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경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 제100조제3항은 그 외에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해서도 문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100조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만 반복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괄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100조제2항에서 반영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100조제5항에서 규정된 이행명령 이행 후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대집행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중 중복 부과 내용은 일괄개정안 제10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00조 6항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 및 제67조¹⁸⁾ 준용 규정은 일괄개정안 제10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기본법 중복 사항은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18) 「도로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50조의3은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물류단지시설 건설공사 관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보 방법, 반복 부과 기준, 징수 기간·방법 및 제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방법, 징수 기간·방법 및 제한 기준 등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유형2).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시설 등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에 따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0조의3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문서 사전 고지, 사전 고지의 내용,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징수, 시정 명령 이행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금지, 징수 방법,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일괄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

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요건 / 3. 부과 금액 /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 5. 연간 부과 횟수나 횡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 제50조의3 제3항은 그 외에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에 대해서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기본법」 중복 사항은 이를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문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현행 「물류시설법」과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가 일부 상이한바,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이의제기 기관의 기재는 부과대상자의 부과금 납부 편의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부실 검사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정비업자(고용주)에게 해당 인력의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처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일괄개정안은 정비업자(고용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그 상한을 설정하려는 것임(유형1).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u>일정기간</u>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 ----- ----- - <u>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u> ----- ---. ----- ----- -----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 ~ 9. (현행과 같음)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현행	개정안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일괄개정안은 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부실검사 등 위법행위를 하여 정비업자(고용주)에게 해당 인력의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이때, 처분 기간의 상한인 6개월의 기간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일반기준에서 가중 처분 기간을 합산한 최대 직무정지 기간을 6개월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같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마. 관할 관청이 가목 또는 라목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사. 관할 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 자	기술인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지정취소	해임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해임
아.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30일
자. 법 제43조제6항(법 제43	법 제45조의3	1차: 업무정지 10일	1차: 직무정지 10일

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차.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카.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타.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거.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너.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8호의2 법 제45조의3 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10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12호 법 제45조의3 제1항제12호의2 법 제45조의3 제1항제13호 법 제45조의3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지정취소 ①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②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u>2차: 직무정지 30일</u> <u>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u> <u>1차: 직무정지 60일</u> 2차: 해임 <u>1차: 직무정지 60일</u> <u>2차: 직무정지 90일</u> 3차: 해임
--	--	---	---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4호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u>직무정지 10일</u>
러.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u>법 제46조제2항제9호</u>		
머.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5호	지정취소	
버.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서.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7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어.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8호	지정취소	

일괄개정안은 「행정기본법」¹⁹⁾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처분의 근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별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재처분의 상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행정의 예측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²⁰⁾. 다만, 적정한 제재처분의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이는 행정을 경직적으로 만들

19)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해서도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반 행위 태양별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대통령령등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수 있으며, 특히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재처분의 상한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점검결과,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60일, 직무정지 60일을 부과하는 등 약 3년 간 167건이 적발되어 처분되었음.

【 2021년~2024년 상반기 합동특별점검 결과 】

구 분	'21上	'21下	'22上	'22下	'23上	'23下	'24上	계
적발건수	37	25	26	17	16	25	21	167

자료 : 국토교통부

다.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도 상한 규정이 필요함. 또한 직무정지 처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검사규칙에서 최장 정지기간을 90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주차장법」 제32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전통보 방법, 반복 부과 기준, 징수 기간·방법 및 제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방법, 징수 기간·방법 및 제한 기준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유형2).

현행	개정안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현행	개정안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2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문서 사전 고지, 사전 고지의 내용,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징수, 시정명

령 이행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금지, 징수 방법,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일괄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 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요건 / 3. 부과 금액 /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 제32조 제3항은 그 외에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에 대해서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일괄개정안의 제32조제2항에 반영됨.

다.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